

# 알아봅시다!

## 공정거래법

그거알아요..?

오늘의 주제는

담합의 개념

시작하기



## 공정 거래 법

## 부당공동행위(담합)란

「제40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



2개 이상의 사업자 간 계약, 협정, 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용역의 가격, 거래조건, 거래량,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써,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.



부당공동행위(담합)의 생립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을까요?



## 담합의 요건

1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

2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

▶ 계약,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

+

▶ 암묵적 동의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

※ 합의에 따른 의사가 없어 거짓으로 합의 후 합의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



### 합의의 추정

▶ 명시적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, 공동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, 합의로 추정될 수 있음

합 의 서

내용 ~~~~~

00년 0월 0일

대표이사 000

대표이사 000



## 유의사항

- 1 경쟁사 직원과 입찰 가격, 거래조건 등 **핵심 사항**에 대한 **정보교환은 절대 하지 않아야** 합니다.
- 2 경쟁사 모임에서 담합 제안, 가격 공유 등 **민감한 주제 논의 시 거부 의사**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.
- 3 담합은 모든 사업자가 아닌 **일부 사업자만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**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4 담합은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, **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**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방(주)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해 주세요

